

7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금정구가 2017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합계	기초생활 보장 (081)	취약계층 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계	180,604	38,596	29,010	37,540	72,557	2,902	0	0	0
국비	118,488	30,639	12,446	21,029	52,942	1,431	0	0	0
시·도비	49,078	2,453	15,660	13,795	16,519	652	0	0	0
시·군·구비	13,038	5,504	904	2,716	3,096	819	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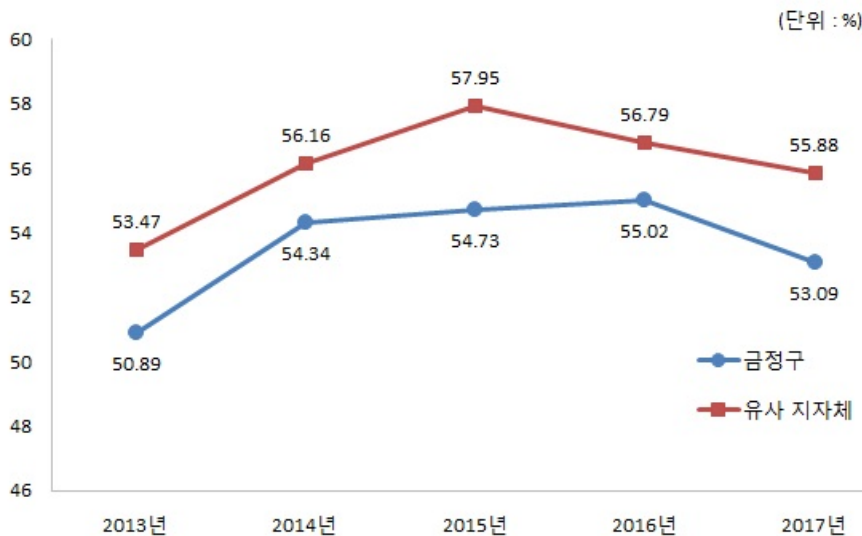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245,496	259,988	292,106	304,629	340,199
사회복지분야(B)	124,921	141,281	159,864	167,619	180,605
사회복지분야비율(B/A)	50.89	54.34	54.73	55.02	53.09
인구수(C)	253,526	249,856	246,026	244,624	244,469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493	565	650	685	73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 세출결산액의 증가로 사회복지분야의 비율은 지난해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절대적인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증가하였고 주민 1인당 사회복지비 역시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의한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금정구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340,199	40,901	12.02%	
민간경상보조 (307-02)		2,625	0.77%	
민간단체운영비보조(307-03)		221	0.06%	
민간행사보조 (307-04)		126	0.04%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24,856	7.31%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2,779	3.76%	
민간자본보조 (402-01)		294	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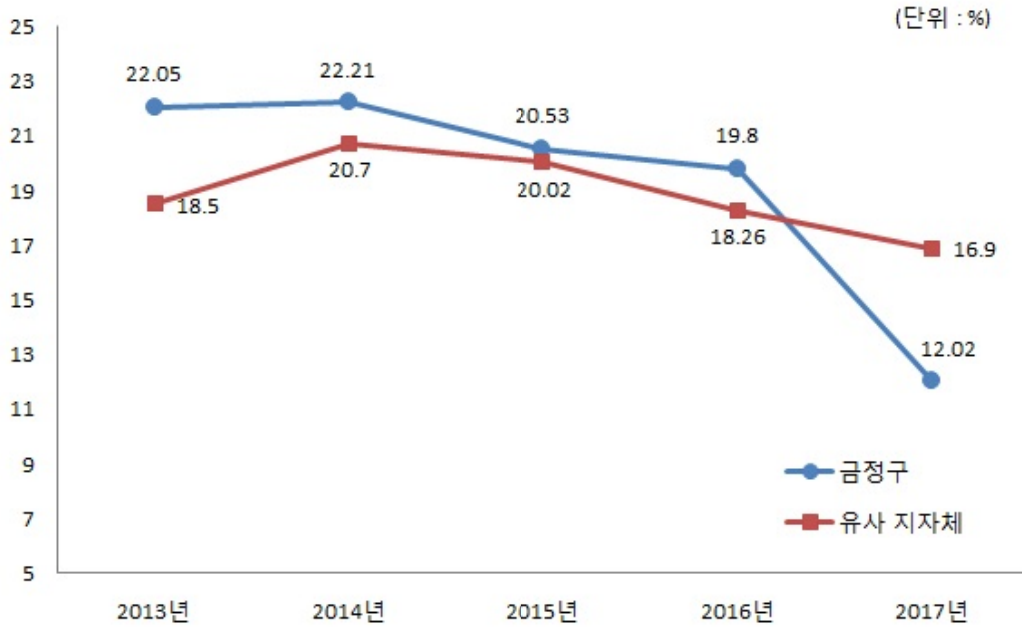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245,496	259,988	292,106	304,629	340,199
지방보조금(민간)	55,246	57,753	59,976	60,303	40,901
비율	22.50%	22.21%	20.53%	19.80%	12.02%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7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별첨 2】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2017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별첨 3】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금정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금정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6. 행사·축제경비

- 다음은 우리 금정구가 2017년 한 해 동안 구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40,199	518	0.1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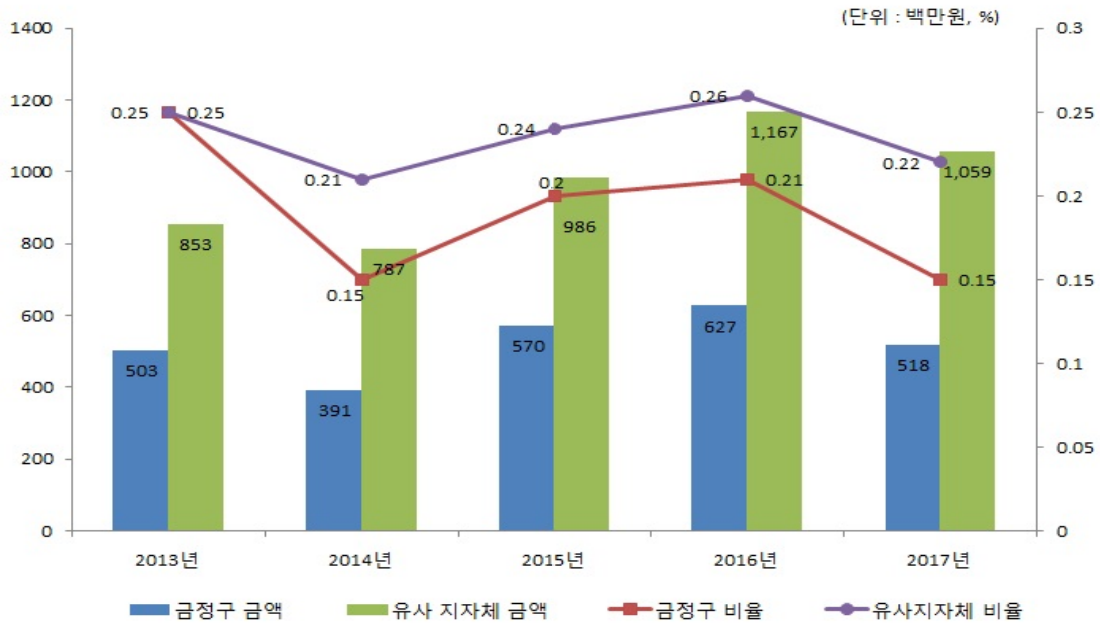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245,496	259,988	292,106	304,629	340,199
행사·축제경비	503	391	570	627	518
비율	0.21%	0.15%	0.20%	0.21%	0.15%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우리 구의 2017년 행사·축제경비는 5억 1800만원이며 2016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2017년 개최한 대표적인 행사·축제로 제6회 금정구 평생학습 박람회(36백만원), 금정구인·구직 한마당(6백만원), 과학축제&토요스쿨 페스티벌(7백만원), 금정 POWER 콘서트(20백만원) 등이 있습니다.